■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9.11.20>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제21조제1호라목 관련)

전 기 설 비	기 재 사 항
1. 발전소	
가. 설치 또는 출력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1. 명칭 및 위치 2. 원동력의 종류(수력발전소는 취수하는 하천 및 그 수계(水系)의 명칭이나 유입식·조정지식·저수지식 및 양수식의 구분, 기력발전소는 연료의 종류,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의 형식 및 연료의 종류를 적을 것) 3. 출력(변경의 경우에는 증감 출력) 4.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연간 가능발전 전력량(변경의 경우에는 증감되는 연간 가능발전량을 적고 양수식의 경우에는 양수발전분을 구분하여 적을 것. 그에 따라 다른 수력발전소의 연간 가능발전량의 변경이 부수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연간 가능발전 전력량의 증감분) 5. 발전전력의 송전방법 6. 공사비 개괄 산정액 7. 착공·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 연월일
나. 폐 지	1. 명칭 및 위치 2. 원동력의 종류 3. 출 력 4. 폐지 이유 5. 폐지 예정 연월일
2. 변전소	
가. 전압 15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또는 용량의 변경	1. 명칭 및 위치 2. 출력(변경의 경우에는 증감 출력) 3. 공사비 개괄 산정액 4. 착공·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 연월

	일
나. 전압 15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폐지	1. 명칭 및 위치 2. 출 력 3. 폐지 이유 4. 폐지 예정 연월일
3. 송전선로	
가. 전압 1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 또는 구간의 변경	1. 명칭, 구간 및 경유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의 명칭 2. 회선 수 3. 전 압 4. 전선(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굵기 5. 공사비 개괄 산정액 6. 착공·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 연월일
나. “가”의 전선로의 폐지	1. 명칭 및 구간 2. 전 압 3. 폐지 이유 4. 폐지 예정 연월일